

의안 번호	1857	[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21. 12. 3.(금)
- 나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2. 3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14.(화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일부 개정(2022. 1. 13. 시행)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수당(안 제2조)
- 다. 여비(안 제3조)
- 라. 수당지급의 제한(안 제4조)
- 마. 시행규칙(안 제5조)

4. 근거법규 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8조제5항

5. 검토의견

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